

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. 11. 13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담양군의회 연간 총 회의 일수를 확대함으로써 회기 중 군민들의 의견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확장하여 의회의 민의 대표 기능을 강화하고,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 및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회의 일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90일 이내→100일 이내

나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5. 11. 13. ~ 11. 18.(5일간)

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 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5년 1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”로, “의하여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따라 담양군의회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개최)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총90일”을 “총 10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날”을 “다음 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“총선거”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11월20일”을 “11월 20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1/3이상”을 “3분의 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회의규칙을”을 “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 을”로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3조와 제54조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<u>담양군의회</u> 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 제53조----- ----- <u>따라</u> <u>담양군의회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	제2조(개최)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제3조(회기)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<u>총90일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<u>범위</u>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(회기) ----- ----- <u>총 100일</u>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.
제4조(집회) 정례회의 집회일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일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	제4조(집회)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<u>다음</u>

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·10월중에 정할 수 있다.
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20일에 집회한다.

3. 임시회는 군수나 재적의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는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날-----.

1. -----
----- 「공직선거법」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-----.

2. ----- 11월 20일-----.

3. ----- 3분의 1 이상-----.

제6조(준용) -----

----- 「담양군의회 회의 규칙」 을 -----.